

NSL1.75

인권정보자료실
NSL1.75

<토론회 자료집>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시 : 2000년 7월 18일(화) 오후 2시
-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 주최 :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

인권정보자료실
NSL1.75

◇ 국가보안법 토론회 ◇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0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토론사회 : 정 범 구 의원 (민주당)
- 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발표

정 용 석 교 수 (단국대. 정치학)

박 원 순 변호사 (참여연대사무처장)

- 토론자

최 병 국 의원 (한나라당)

정 우 택 의원 (자 민 련)

임 종 석 의원 (민 주 당)

안 영 근 의원 (한나라당)

○ 주최

◇ 국가보안법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 ◇

김원웅 김홍신 오세훈 서상섭 김영춘 심규철 안영근

정범구 이재정 이미경 김성호 이호웅 송석환 임종석

송광호 정진석

차

○ 연락처 : 김원웅 의원실 (788-2383)

정범구 의원실 (788-2912)

[목 차]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목 차	-----	1
식 순	-----	2
인 사 말	-----	3
주제발표 발제문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정용석 교수)	-----	4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박원순 변호사)	-----	10
첨 부 자 료		
국가보안법 전문	-----	13

◆ 인사말 - 김원웅 의원
정범구 의원

◆ 참석자 소개

◆ 수 세 발 표
정용석 교수
박원순 변호사

◆ 주 제 토 론

사 회 : 정범구 의원

토론자 : 최병국 의원 → *코치*

정우택 의원 → *김영훈 (개정유지)*

임종석 의원 → *포계지*

안영근 의원

◆ 질 의

◆ 폐 회

국 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에는 가꾸어 온 사람의 노력이 깃들여 있듯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의 관심과 의지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풀어내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된 지 50여년이 흘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였던 '치안유지법'과 '사상범예방구금령' 등을 그 모태로 하여, 독재정권 시절엔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통치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동안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고,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의 새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반인권적악법으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현재 200여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에 가입해 있으며 천주교, 불교, 개신교에는 각각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대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 7조 폐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모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에는 121개 단체가 결합해 있듯이 여러 곳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6.15 남북정상회담이래 북한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수괴」와 교류와 협력, 통일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전의 마지막 섬,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이렇듯 분분한 의견들 속에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0년 7월 18일

국 회 의 원

김 원 웅 · 정 범 구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鄭鎔碩(단국대학교수·정치학)

◇ 목 차 ◇

I.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

II. 존치되어야 할 8가지 이유

- (1) 국가체제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 장치
- (2) 북한과의 법적장치상의 형평성 유지
- (3) 남북교류협력 방해 안 되는 안보장치
- (4) 부단한 법개정·보완 노력
- (5) '반국가단체'와 교류협력의 대상
- (6) '냉전시대 유물'이나 체제 수호 장치
- (7) 법체계는 변화의 마지막 단계
- (8) 보안법폐지 부적절한 시기

III. 인권유린과 추상적 적용문제

- (1) 인권유린
- (2) 추상적 적용

I.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

보안법은 국가체제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 장치로서 요구된다. 북한과의 법체계상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방해되지 않으며 '반국가단체' 항목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동안 개정들을 통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문제점들을 최소화했다. 또한 '냉전시대유물'이지만 국가보안법은 시간을 초월한 자유체제 수호법이다. 북한은 아직도 불확실한 존재로, 특히 법체계는 사회안정을 위해 변화의 마지막 순서라는데서 보안법 개폐는 신중해야만 한다.

그밖에도 지금은 보안법 개폐의 부적절한 시기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유린과 추상적 적용상의 문제점에는 유의해야한다. 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확대해석하고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II. 존치되어야 할 8가지 이유

(1) 국가체제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 장치

보안법 제1조1항이 밝힌 대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데서 필수적이다.

이 법이 폐지될 때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며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힘들고 국가안전과 국민생존 및 자유가 위협받는다.

(2) 북한과의 법적장치상의 형평성 유지

북한은 남한보다 더 혹독한 반국가 활동 규제 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헌법 156조 2항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는 대목은 남한을 계급적 원수로 삼고 반대하며 적극 투쟁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중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족주의의 혁명과 법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기하며, 이는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 헌법 11조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영토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로동당의 남한적화를 목표로 진행할 것을 의미한다.

북한 형법의 '반혁명범죄'(51~66조)는 남한 보안법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도 광범위하게 다스리며 형량도 훨씬 무겁다.

56조에서는 "① 말·동작으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중상·비방하거나 반동적 사상과 요언(妖言)을 조작·유포·전달하는 행위. ② 반동적인 출판물과 문서를 작성·보관·유포하는 행위. ③ 반동적인 낙서·투서를 하는 행위" 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반혁명적인 감정과 사상을 가지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게 된다.

65조에서는 반혁명범죄 은닉죄를 범했을 경우 가족·친족 여부 불문하고 2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66조에서는 불신고·방임죄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52조와 53조는 남한을 '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헌법, 로동당 규약, 형법 등을 그대로 둔 채 남한의 보안법만 폐기한다는 것은 체제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것과 같이 성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남북교류협력 방해 안 되는 안보장치

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남북당 국자회담, 인적물적교류, 남북정상회담 등에 방해되지 않은 이유는 보안법이 입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안법의 목적은 1조 1항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와의 남북교류를 국가안전에 위태롭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저촉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반세기의 남북교류관계사가 실증해준다. 70년대초 이후 반공법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남북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이산가족교향방문, 정상회담 등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

(4) 부당한 법개정·보완 노력

1961년의 '반공법'은 80년 12월 '국가보안법'으로 대체되었고 91년 7월 이 법 중에서 독소조항들을 삭제하였다. 91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만만히 해소되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기존법에서는 2조1항 '반국가단체'규정을 '정부를 잠정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집단'으로만 표기했었으나 91년 개정은 여기에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는 대목을 덧붙여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보다 선명하게 개념화했고 범위도 축소시켰다.

기존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롭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였으나, 개정판은 찬양·고무의 범법성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제한하며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 5조와 6조는 반국가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화합 통신하였을 때 처벌한다고 했으나, 91년 개정안은 거기에 구체적 조건을 붙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위한다고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에 이은 91년의 보안법개정은 법조문의 추상적 적용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물론 만족한 만한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적용상 또는 해석상 문제점을 수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법 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였다. 이와 같은 1조 2항은 91년 개정시 새로 삽입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법집행에 있어서도 인권침해나 부당한

적용은 실제 개선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5) '반국가단체'와 교류협력의 대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놓고서 교류협력대상으로 삼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며 모순이므로 반국가단체에 대한 개념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교류협력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 아니고 남한 헌법과 체제를 지키며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면 실행상 모순이 아니다. 그러한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6.25 한국전쟁 때 적과 전쟁 중인데도 유엔군측 군인들은 휴전협상을 위해 북한 지배지역인 개성으로 들어가 적과 마주앉아 협상을 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상으로는 이적행위로서 총살 감이다. 군무이탈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며 정전협정을 위한 협상이라는데 문제가 안되었던 것이다.

미국이 1950년 제정한 '전북활동통제법(The Sub Activities Control Act)'은 다음사항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미국 내에 전체주의 독재체제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동의, 음모, 연합하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자'는 처벌받는다.

또한 미국이 1954년 제정한 '공산주의자 통제법'은 '미국의 공산당은 정치정당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수단'이라고 선언하였으며 고로 불법화라고 말하고 있으며, '공산당이거나 미국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어떤 조직체 회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그러고 알면서 머무는 자는 처벌대상'이다.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와 정상회담,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선의의 만남은 괜찮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6) '냉전시대 유물'이나 체제 수호 장치

일부 국민들은 보안법이 냉전체제 유물이므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화해협력시대로 접어든 만큼 구시대유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냉전시대 산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시간을 초월한 자유민주체제 수호법이라는 측면도 명백히 있다. 따라서 북한이 1인 공산독재체제로 존속하는데 체제 수호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존치되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이 아닌 제도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형태의 법체계는 필요하다.

미국은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조리 부시대통령이 냉전종식을 선언했는데도 곧바로 '공산주의자 통제법'과 '전북활동 통제법'을 폐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이며 미국 공적1호였던 소련이 해체된 지 어언 10년이 다 되지만 아직 위의 법들을 폐기하자는 의견조차 안나왔다.

그밖에도 오늘의 남북관계는 냉전이 해소되고 평화공존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데서 냉전유물 폐기 주장은 성급하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전략은 변치 않고 오직 남한의 햇볕정책과 연결고리를 맺고 실리를 취한다는 전술적 변모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당기간 조심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 두 체제 이데올로기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7) 법체계는 변화의 마지막 단계

법체계는 국가 구성체계 변화들 중 가장 늦게 변하는 속성이다.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닌 상황 속에서 법체계를 서둘러 변화할 때 감당키 어려운 혼란과 위험수반이 따른다. 특히 만의 하나라도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 될 보안법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대상이다. 김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튼튼한 안 보위에 선다"고 되풀이 강조했음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8) 보안법폐지 부적절한 시기

지금 일부 국민들은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의 급진적, 남북정상회담, '김정일 쇼크' 등으로 안보상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이 때 보안법폐기는 이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북한측에서도 남한측이 쉽게 반응한다고 알잡아 보일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북한이 그 동안 보안법 폐지를 대남공세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아왔던 것을 남한이 받아들인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북한 요구에 굴복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위험한 것이다. 형법예의 편입이나 대체입법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상태이다.

Ⅲ. 인권유린과 추상적 적용문제

(1) 인권유린

보안법 중 인권유린 대목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점진적 보완이 타당하다. 동시에 사법부의 민주적 인권의식에 따른 판결을 통해 인권을 보완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예컨대 서울 지방법원 형사 합의 23부(감시위 부장판사)는 2000년 6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29·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고 박씨를 풀어주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도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사건에 대해 범의를 따져 처벌여부를 따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추상적 적용

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확대해석하는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7조 고무찬양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목은 추상적 뜻을 함축함으로써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날 수 있다.

물론 이 법 1조 2항에서 법의 해석적용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가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 규정을 삽입, 예방조치를 취했으나 자의적 해석 여지는 남아있다. 고로 이 조항의 본래정신을 살리면서 확대해석을 막을 수 있는 보완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다만 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보완법 7조 1, 3, 5항(이적 동료활동 및 이적단체 구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선고받았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보완법 7조의 구성요인이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점은 있다며 "그러나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된 만큼 위험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보완법 개폐론은 시대적 상황논리로 보아 적절치 않고 국가안보상황으로 미루어 적절치 않으며 개폐논리의 타당성 또한 적절치 않다. 다만 인권유린과 추상적 적용의 문제점은 보완법의 기본정신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우상의 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 목 차 ◇

1. 서론
2.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
(1) 중복성
(2) 위헌성
(3) 시대착오성
(4) 추상성, 남용성
3.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이론에 대한 반박
(1) 북한과 상호주의
(2)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

1. 서론

2.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

(1) 중복성

국가보안법은 이미 기존의 법률과 거의 완벽히 중복된다.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가 기존의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롯한 특별형법조항에 의해 국가보안법에 예정하는 모든 행위유형이 처벌되고 있다¹⁾. 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동조행위만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

1) 예컨대 국가보안법 제4조1항은 다음과 같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형법 92조 내지 97조,99조,250조2항,338조 또는 340조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나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2) 위헌성

다른 형법법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동조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 적어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우리 헌법의 보장 요소이다. 그런데 그 동안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심지어는 예술적 표현조차 처벌당하기 일쑤였다. 이 조항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중핵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3) 시대착오성 -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률은 없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우리가 모델로 했던 치안유지법은 일제의 법제로서 일본은 전후 이것을 폐지하고 그 대신 파괴활동방지법을 만들었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미국을 포함하여 선진제국은 간첩죄를 가지고 있으나 모두 그 요건이 대단히 자세하고 까다로워 남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대만의 법제도 폐지되었다. 동남아의 국가안보를 근거를 한 반인권 법제가 없지 않으나 우리처럼 추상적인 조항은 없으며 그것마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조차도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폐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

(4) 추상성,남용성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국가보안법은 남용될 수밖에 없다. 구성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북한을 고무하고 찬양한 것이란 말인가. 보기에 따라서는 역대 통일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대통령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 300만 부가 팔렸다는 태백산맥의 모든 독자,서점주인이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자가 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이론에 대한 반박

2.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 -
3.형법 제115조,119조1항, 147조,148조,164조 내지 169조,177조 내지 180조, 192조내지 195조, 207조,208조,210조,250조1항,252조,253조,333조,내지 337조, 339조 또는 340조1항,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1) 북한과의 상호주의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옷을 다 벗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우선 북한은 우리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신형법은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에 반역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다르다.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에서 유의미한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뿐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유린하는 것이고 또한 절대다수의 적용대상이 바로 7조 위반자들이다²⁾.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향한 법이 아니고 바로 국내 국민들을 향한 법임을 의미하고 있다. 자기검열, 억압기대로 작동.

뿐만 아니라 북한이 반인권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이다.

(2)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

형법의 간첩죄는 "적국"에 대하여 간첩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북한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반국가단체가 유의미하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이미 대법원이 북한을 준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여 간첩죄로 처벌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 문제가 된다면 형법을 개정해서 북한을 포함하도록 하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2) 1997.1 - 1999.8.31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현황 (99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자료)

7조3항	7조1.5항	8조 등 기타
1033명	281명	29명
76.92%	20.92%	2.16%

【첨부자료】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침략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 1항 제 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 2항, 제 338조 또는 제 340조 제 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 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 115조, 제 119조 제 1항, 제 147조, 제 148조, 제 164조 내지 제 169조, 제 177조 내지 제 180조, 제 192조 내지 제 195조, 제 207조, 제 208조, 제 210조, 제 250조 제 1항, 제 252조, 제 253조, 제 333조 내지 제 337조, 제 339조 또는 제 340조,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 214조 내지 제 217조, 제 257조 내지 제 259조 또는 제 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 1항의 제 1 호 내지 제 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 1항 제 5호 및 제 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 - 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91.5.31)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 제 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 1항, 제 3항 또는 제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 제 1항 또는 제 3항 내지 제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 제 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개정 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 삭제 (개정 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1항, 제 3항(제 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 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 또는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 3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2항 내지 제 5항, 제 4조 제 1항 제 1호 중 형법 제 94조 제 2항, 제 97조 및 제 99조, 동항 제 5호 및 제 6호, 제 2항 내지 제 4항, 제 5조, 제 6조 제 1항 및 제 4항 내지 제 6항, 제 7조 내지 제 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 3조 내지 제 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 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

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① 제 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조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 2조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 3조 내지 제 9조

부칙 제 2항 제 3호를 제 4호로 하고, 동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 제 1조 내지 제 8조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 제 3조 내지 제 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 3항 중 "부칙 제 2항"을 "부칙 제 2항(제 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중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 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 2조 중 "국가보안법 제 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 11조"를 "국가보안법 제 15조 제 2항 및 제 22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 구형법 제 2편 제 2장 내란에 관한 죄, 제 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 32조, 제 33조, 구해안경비법 제 8조의 2, 제 9조,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조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